

화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97. 10. 7 화순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97. 10. 7

다. 상 정 일 자 : 97. 10. 22 (제57회 임시회 제1차 산업·건설위원회)

2. 제안 설명요지

가. 제 안 자 :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

나. 개정사유

- 민영 주차장 설치에 따른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, 주택등의 부설 주차장 설치를 유도하고 경자동차 보급을 확대키 위함과 아울러 보철(국가유공 상이자)용 차량의 공영 주차료를 50% 할인 하기 위함.

다. 주요내용

- 주차장 확충을 위해 주택등 부설 주차장을 설치할 때 주차장 특별회계를 통한 자금의 융자 또는 보조가 가능하도록 주차장법을 개정 하였으나 시행이 미비하여 '97. 6. 12 건설교통부로부터 개인이 기존 주택의 담장등을 개조하여 집안으로 자동차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할 경우 그 개조 비용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일부 융자 또는 보조하고 민영 주차장 건설에 따른 보조 및 융자금을 당초 20,000천원을 30,000천원까지 확대하며, 경자동차의 보급확대와 보철용 차량(국가유공 상이자)의 주차비 50% 감면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.

3. 검토보고 요지

- 동 조례 개정안은 날로 증가되는 노숙 차량으로 인하여 소방도로의 기능마저 위협을 느끼고 있는 현실측면에서 볼때 적절한 뒷받침이라고 판단되나,
- 민영주차장설치 지원 범위의 확대와 개인이 주택의 담장을 개조하여 집안으로 자동차를 진입할 수 있는 주차장 개조비용 보조 또는 융자의 범위를 포괄적인 개념을 떠나 상위법령인 주차장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우리군의

경우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바,

- 노외주차장의 설치 비용을 일부 보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실제 보조금 없이 융자금으로 시행하여 참여율이 저조하며, 주택의 담장등을 개조하여 부설 주차장 형식으로 설치할 경우 또한 집행부에서는 보조금 없이 융자로 추진할 계획인바 그 실효성을 거두기는 매우 희박하다고 사료되며,
- 인근 나주시의 경우는 10. 20 주차장 조례 개정에 따른 상임위원회에서 주택의 담장을 개조하여 부설 주차장 형식의 구조를 설치할 경우 50%보조, 자담 50%로 조례 개정안을 심사 하였고, 지난 10월 16일 전라남도로부터 여천시에서 주차장에 관한 평가회를 실시한 결과 시군에서 일관성이 없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주차장 개정 조례안에 대한 예시를 작성하여 시군에 통보키로 하였으니 동조례안은 본 위원회에 계류하여 추후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4. 질의답변 요지

"생 략"

5. 토론요지

"생 략"

6. 심사결과

"수정가결"

<수정가결 내용>

개정안 - (제26조제2항4호) 개인이 기존주택의 담장을 개조하여 집안으로 자동차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할 경우 그 개조 비용의 융자 또는 일부보조

수정안 - (제26조제2항4호) 개인이 기존주택의 담장을 개조하여 집안으로 자동차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할 경우 그 개조 비용의 50% 범위내에서 일부 보조할 수 있다.

단 1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.

첨 부 : 화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. 끝.

화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7 - 116
----------	----------

제출일자 : 1997. 10. 7

제출자 : 화순군수

1. 제안이유

- 민영주차장 설치비 지원 범위를 확대 및 용자금 지원 한도액을 상향조정하여 민영주차장 설치를 유도하고, 경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경자동차에 대한 공영주차료를 50% 할인제를 시행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.

2. 주요골자

가. 민영주차장 건설지원 촉구

- 설치비 지원범위 확대 (안 제26조 제2항 제4호)
개인이 기존 주택의 담장등을 개조하여 집안으로 자동차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할 경우 그 개조비용의 50%까지 보조 (단 100만원범위 이내)
- 용자 한도액 상향조정 (안 제28조 제1항)
주차장 설치비 용자 한도액 20,000천원을 30,000천원까지 상향 지원

나. 경자동차 보급 확대 (안 제10조 별표 1 비고 제5호)

- 경자동차에 대한 공영주차장의 주차료를 50% 할인

화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

화순군주차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 제2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의 4. 개인이 기존주택의 담장을 개조하여 집안으로 자동차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할 경우 그 개조 비용의 50%까지 보조할 수 있다. 다만 이 경우 보조 금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27조제1항중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자중 용자를 "제26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용자 또는 일부보조"로 한다.

제28조제1항중 "20,000천원"을 "30,000천원"으로 하고 동조동항중 "용자할 수 있다"를 "용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"로 한다.

【별표 1】 비고중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군수는 당해지역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.

가. 장애인 자가운전차량 및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 : 50%

나.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경자동차 : 50%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6조①(생략) ②(생략) 1 - 3 (생략) 4(신설)</p> <p>제27조①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중 용자를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재정보증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.</p> <p>제28조①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자결정심사를 할때에는 주차장설치 비용을 감안하여 20,000천원 범위안에서 설치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용자할 수 있다.</p> <p>【별표 1】 비교</p>	<p>제26조①(현행과 같음) ②(현행과 같음) 1 - 3 (현행과 같음) 4. 개인이 기존주택의 담장을 개조하여 집안으로 자동차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할경우 그 개조비용의 50%까지 보조할 수 있다. 다만 이경우 보조금액은 1000천 원을 초과할 수 없다.</p> <p>제27조①제26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용자 또는 보조를 ----- ----- -----</p> <p>제28조① ----- ----- ----- 30,000천원 ----- ----- 용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.</p> <p>【별표 1】 비교</p>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5. 군수는 주차요금을 지역의 특성 및 차종에 따라 당해지역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20퍼센트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체증 또는 체감할 수 있으며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 및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에 대하여 50%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.</p>	<p>5. 군수는 당해지역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가.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 및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 : 50%</p> <p>나.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경자동차 : 50%</p>